

한국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학회 회칙 제7장 제27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균학회지와 Mycobiology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위원회는 국문지(한국균학회지) 위원회와 영문지(Mycobiology)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각 10인 내외의 간사 및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한국균학회지와 Mycobiology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각종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기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간사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교체 수는 전체의 1/2 내외로 한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편집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투고논문의 심사) ① 편집간사는 배당한 투고논문을 전공분야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간사는 이월 받은 투고논문의 심사를 2주 이내에, 수정이 필요한 논문은 4주 이내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간사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을 인쇄할 수 있는 상태로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투고논문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여 최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2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 가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게재 가'로 결정한다.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로, 다른 1인이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투고자에게 제시하여 수정을 요청하며 수정내용을 편집간사가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부'로, 다른 1인이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거나, 편집간사가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인이 게재 부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논문을 저자에게 반송하며 심사위원의 의견 등 그 사유를 통보한다. 기타로 분류된 심사 결과는 편집간사가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한다.

제7조 (투고논문의 재심)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투고 논문의 재심 청구가 있을 때에는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며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 (부정논문의 심사 및 처리) 투고논문의 심사과정 중, 표절, 데이터 중복사용, 이중 게재 및 조작 등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윤리에 심각한 위반이 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편집간사 혹은 편집위원은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논문에 대한 처리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만약 특정의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저널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 이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철회 및 연구자 및 해당 조직에 통보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발행예정일) 한국균학회지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하고 Mycobiology는 매년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발행한다.

제10조(보고) 위원회는 사업업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2. 10. 11, 2016. 11. 3, 2018. 08.23, 2019.12.27)